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3265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서울특별시

조 합 현 황			취소사유	취소근거	취소일
인가번호	조합명(이사장)	소재지			
서울특별시 제2011-9호	동양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 (김종성)	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, 409호 (연지동, 한국기독교회관)	시정명령 미이행	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3호	2023.11.15.

문의 :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

(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,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5층, 전화 02-2133-5364)